

서울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20216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박종휘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763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86,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행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제5면 제4행을 “나. 피고의 주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갑 제11 내지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2020. 7. 15.자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S유한회사에게 229,081,857원 전액, T에게 3억 5,000만 원 전액, U에게 채권액 365,679,537원 중 133,709,1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V). ③ 이로써 C의 채무는 U에 대한 231,970,427원(= 365,679,537원 - 133,709,110원), W에 대한 약 8억 1,000만 원, X에 대한 약 2억 원이 남게 되었다. ④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0.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Y),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42,294,575원이다. 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6 기재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1억 9,750만 원(= 7억 9,000만 원 × 1/4 지분)이다.

이를 종합하면, C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 2)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P은행, F, H조합,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C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Z 주식회사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L’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② C는 2016. 1. 4. 피고를 대리하여 L(R이 위 회사를 대리하였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2015. 8. 28. 피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 소유 I 소재 건물의 매도대금(2015. 7. 15.자 매매계약)의 잔금 1억 원이 입금된 뒤 2015. 8. 31. C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2015. 9. 6.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④ 피고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은행 계좌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2015. 9. 7.자 매매계약) 중 계약금으로 2015. 9. 7. 81,073,750원, 2015. 9. 18. 12,224,140원이 각 송금되었다. ⑤ 피고 명의의 위 F 계좌를 통해 2015. 2.경 이후로 건설자재대금 등이 이체되었고,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⑥ C는 피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4. 7. 2,500만 원, 2017. 5. 15.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바로 L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 2017. 11. 3. 250만 원, 2017. 12. 13. 1,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⑦ 피고는 위 F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입금받은 뒤 곧 C 또는 L 명의의 F 또는 Q은행 계좌로 수차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⑧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위 계좌에서 수차 납입되었다. ⑨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가 수차 납입되었다. ⑩ C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서도 피고와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고,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많으며, C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L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면서 딸린 피고를 대신하여 사실상 주도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나 신축공사의 진행 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C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와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만 피고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C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C를 대위해서 피고에게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고양시 덕양구 AA 대 468㎡
2. 고양시 덕양구 AA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박공)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1.84㎡, 2층 55.89㎡
3. 고양시 덕양구 AB 도로 101㎡ 중 4분의 1 지분
4. 고양시 AC 입야 595㎡ 중 595분의 33 지분
5. 고양시 덕양구 AD 도로 115㎡ 중 3분의 1 지분
6. 고양시 일산동구 AE 아파트 AF호 중 4분의 1 지분. 끝.

